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11월 8일
-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 라. 상정일자: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와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를 명시함.
 - 안 제6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류 배출방법 등에 대해 명시함.
 - 안 제8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9조 ~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지급·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지도점검 방법에 대해 명시함.
- 검토 결과
 -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총 43,008톤 발생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만 24,444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발생량의 56.8%가 일반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연간 1인당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57.7kg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은 사람의 식생활에 있어서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의 음식물류 쓰레기 관리 대책은 주로 발생 후 처리과정과 대량 발생하는 장소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생 장소 기준 소량 배출되지만 전체 발생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가정(단독·공동주택)의 감량 대책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제정안의 제정 시기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감량화를 위해 감량 기기 설치 권장과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감량률이 높고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 설치 등의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조건을 세분화하여 명시함.

- 안 제7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후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세대별, 비율별, 금액별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 ~ 안 제10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신청자와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함. 아울러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등에 대하여 현장 및 서류 확인의 절차를 통한 적정 여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11조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세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반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2년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정 수급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에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명시하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이렇게 3곳 밖에 없는 실정으로 우리 구도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세대가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경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문화 조성을 통해 환경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2
----------	-----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이성수·유승용·이순우
최인순 의원(4인)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적용범위와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1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 증제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

계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가열·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료·퇴비로 사용하거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 용기 또는 RFID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은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

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